

# 支給·引受·買入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에 관한 研究

文 哲 漢\*

---

目 次	
I. 序 論	IV. 買入信用狀의 特性과 使用 方式
II. 支給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1. 制限買入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1. 一覽支給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2. 自由買入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2. 延支給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V. 結 論
III. 引受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1. 支給·引受·買入信用狀의 特性比較
1. 引受信用狀의 特性	2. 各方式의 共通點과 相異點
2. 引受信用狀의 使用方式	3. 結 言

---

## I. 序 論

信用狀이란 어떤 者에 대하여 金錢의 支給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者의 信用을 銀行의 信用에 의해 補強하기 위한 手段의 一種이다. 이  
와 같은 銀行에 의한 信用補強의 手段으로서는 保證狀도 있지만, 信用  
狀은 그 本質에 있어서 保證狀과는 다르다. 즉, 金錢의 支給을 保證하  
는 保證狀은 債務者가 支給의 債務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銀行이  
支給하는 것을 約束하는 것이고, 信用狀은 信用狀上에 明記된 一定의  
條件下에 開設銀行(issuing bank)이 支給을 행할 것을 規定한 것이다.

貨換信用狀이라면 信用狀上에 明記되어 있는 商業送狀, 運送書類

---

\* 江原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經濟學博士.

(transport documents), 保險書類 등의 書類의 提示가 바로 開設銀行에 의한 支給의 要件이다. 현재 通用되고 있는 貨換信用狀의 大部分은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라 칭함)에서 制定한 第4次 改正 信用狀統一規則(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400, 이하 “1983年 規則”이라 칭함)에 準據한 것인데, 1983年 規則 第2條에서는 貨換信用狀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貨換信用狀(documentary credit)이라는 用語는, 어떠한 名稱 또는 表現이 사용되더라도, 顧客(信用狀開設依賴人)의 依賴와 指示에 의해 行動하는 銀行(開設銀行)이, 信用狀의 諸條件이 充足되기만 한다면, 明記된 書類와 相換으로 다음의 事項을 實行한다는 約定(arrangement)을 의미한다. 즉, (i) 第3者(受益者)에 대하여 혹은 그의 指示人에 대하여 支給을 행하는 것, 또는 受益者에 의해 發行된 換어음을 支給 혹은 引受하는 것, 또는 (ii) 그와 같은 支給을 행하는 것을, 또는 그와 같은 換어음을 支給 · 引受 · 買入하는 것을 他銀行에 授權하는 것.”

上述한 바와 같이 1983年 規則은 第2條에서 貨換信用狀이란 信用狀條件이 充足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信用狀上에 明記된 “書類”(documents)와 相換으로 信用狀에 의한 約定을 行하는 約定을 의미한다는 趣旨의 定義를 하고 있다. 1983年 規則은 書類에 관한 明確한 定義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信用狀에 의한 約定을 行하는 方法中에 換어음의 支給 · 引受 · 買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書類 중에는 換어음이 包含되지 않는다는 것은 明白하다.

한편 ICC에서 制定한 推尋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78 Revision, ICC Publication No. 322)은 그 總則 및 定義의 條項에서 書類를 金融書類와 商業書類로 大別하고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sup>1)</sup> “金融書類”(financial documents)란 換어음, 約束어음, 手票, 領收證 또는 金錢의 支給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其他 이와 類似한 證書

---

1) 吳世柱, 信用狀, 貿易經營社, 1984., pp.422-423.

(instruments)를 의미한다. “商業書類”(commercial documents)란 送狀(invoces), 船積書類(運送書類), 權利書類(documents of title) 또는 이와 類似한 書類 및 그 外의 金融書類가 아닌 일체의 書類를 의미한다.

書類에 관한 ICC의 위와 같은 定義를 參照한다면, 1983年 規則 第2條에서 말하는 “書類”란 바로 위의 商業書類에相當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貨換信用狀”이란 商業送狀, 運送書類(trans-  
port documents), 保險書類 등의 商業書類의 提示를 信用狀에 의한 約定한 조건으로 明示하고 있는 信用狀을 말한다고 定義할 수 있다.

위의 定義를 貨換信用狀에 관한 廣義의 定義라 한다면, 狹義의 貨換信用狀이란 物品賣買代金의 決濟手段으로 通用되는 信用狀으로서 換  
어음 以外의 商業書類의 提示를 信用狀에 의한 約定한 조건으로 明示하고 있는 信用狀을 말한다고 定義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國際間의 貿易去來에 있어서 物品賣買代金의 決濟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는 狹義의 貨換信用狀은 商業送狀, 運送書類, 保險書類 등의 商業書類(commercial documents)의 提示를 要求하고 있는 信用狀으로서, 提示된 商業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함으로써 信用狀의 諸條件가 充足되기만 한다면, 그러한 書類와 相換으로, 開設銀行自身이 第三者(受益者)에 대하여 혹은 그의 指示人에 대하여 支給을 행하는 것 또는 受益者에 의해 發行된 換어음을 支給 혹은 引受하는 것을 約定한 證書, 또는 위와 같은 支給을 行하는 權限을, 또는 受益者 발행의 換어음을 支給·引受·買入하는 權限을 開設銀行이 他銀行에게 授權하는 것을 約定한 證書이다.

위와 같이 定義되는 貨換信用狀은 주로 國際間의 貿易去來에 있어서의 代金決濟의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런데 貨換信用狀에 의한 代金決濟의 方式을 “貨換信用狀의 使用方式”이라 칭한다면, 그 使用方式에는 支給方式, 引受方式 및 買入方式이라는 세 가지의 方式이 있으며, 이를 세 가지의 使用方式 사이에는 共通點도 있지만 相異點도 있다.

여기서 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한 貨換信用狀을 “支給信用狀”(pay-

ment credit), 引受方式으로 使用可能한 貨換信用狀을 “引受信用狀”(acceptance credit), 그리고 買入方式으로 使用可能한 貨換信用狀을 “買入信用狀”(negotiation credit)이라 칭한다면, 이들 支給·引受·買入信用狀의 各各의 特性은 무엇이며, 또한 各信用狀의 使用方式은 어떠한 점에서 差異가 있는가를 究明하려는 것이 本研究의 目的이다.

1983年 規則 第11條 a項에서는 “모든 貨換信用狀은 그것이 一覽支給(sight payment), 延支給(deferred payment), 引受(acceptance) 및 買入(negotiation)의 方式中에서 어느 方式으로 使用可能한 것인가를 반드시 明示해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에 따르면, 貨換信用狀의 使用方式은 一覽支給, 延支給, 引受, 買入 등 네 가지의 方式으로 區分된다. 따라서 우리가 一覽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한 貨換信用狀을 “一覽支給信用狀”(sight payment credit), 延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한 貨換信用狀을 “延支給信用狀”(deferred payment credit)이라 칭한다면, 貨換信用狀은 一覽支給信用狀, 延支給信用狀, 引受信用狀 및 買入信用狀이라는 네 가지의 信用狀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一覽支給方式과 延支給方式은 모두 “支給方式”이라는 共通點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83年 規則 第11條 b項은 一覽支給 또는 延支給이 授權된 指定銀行(nominated bank)을 支給을 행하는 支給銀行(paying bank)으로 指稱하고 있다. 또한 1983年 規則의 많은 條項에는, ① pay, accept or negotiate, ② paid, accepted or negotiated, ③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④ paying, accepting or negotiating 등 “支給, 引受 또는 買入”이라는 三分法에 의한 對等한 表現으로 規定되어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貨換信用狀을前述한 세 가지의 使用方式을 基準으로 하여 支給信用狀, 引受信用狀 및 買入信用狀으로 나누는 三分法을 採擇하였으며, 이러한 三分法은 최근 國內外에서 採擇되고 있다.<sup>2)</sup> 다만 一覽支給信用狀과 延支給信用狀은 그 特性과 使用方式에

---

2)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新版), 實業之日本社, 1987, p.47.

있어서 相異點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區分하여敍述하였다. 한편 買入信用狀에 있어서도, 買入이 授權된 買入銀行을 特定의 銀行으로 制限하는 경우와, 그러한 制限을 하지 않고 不特定 多數의 銀行에 의한 買入을 許容하는 경우로 區分되기 때문에, 前者에 該當하는 買入信用狀을 “制限買入信用狀”(restricted negotiation credit), 그리고 後者에 該當하는 買入信用狀을 “自由買入信用狀”(freely negotiable credit)이라 칭하여 각각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을 別途로 區分하여敍述하였다.

本論文은 5個의 章으로 構成되며, 특히 제Ⅱ장에서는 支給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을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와 延支給信用狀의 경우로 區分하여 究明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引受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을 究明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買入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을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로 區分하여 究明하였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支給信用狀, 引受信用狀 및 買入信用狀의 각각의 特性을 比較·檢討할 수 있도록 支給·引受·買入信用狀의 特性 比較表를 提示했으며, 또한 各信用狀의 使用方式은 어떠한 點에서 서로 差異가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各信用狀의 使用方式에 있어서의 相異點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 II. 支給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支給信用狀”(payment credit)이란 前述한 바와 같이 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한 信用狀(credit available by payment)으로서,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는 指定銀行(支給銀行)에 의해 支給이 행해지는 信用狀이다. 여기서 말하는 “支給方式”이란 受益者が 信用狀에 의한 紿付를 받기 위해서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商業書類를 具備하여 指定銀行인 支給銀行에 提示하면, 指定된 支給銀行은 그 書類가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는 한 그 書類와 相換으로 受益者에게 一定한 金錢을 支給하는

方式을 말한다.

이러한 支給方式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一覽支給方式과 延支給方式이 있으며 一覽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한 信用狀을 “一覽支給信用狀”, 그리고 延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한 信用狀을 “延支給信用狀”이라 칭한다면, 支給信用狀은 一覽支給信用狀과 延支給信用狀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支給信用狀의 特性 및 使用方式을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와 延支給信用狀의 경우로 區分하여 서술한다.

## 1. 一覽支給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一覽支給信用狀”(sight payment credit)이란 一覽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한 信用狀(credit available by sight payment)을 말하는데, 그 것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가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는 指定銀行인 支給銀行(paying bank)에 提示되면 그러한 書類와 相換으로 一定한 金錢이 支給되는 信用狀이다.

이러한 一覽支給信用狀의 特性으로는 信用狀上에 一覽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하다는 趣旨의 文言이 반드시 明示된다는 點, 一覽支給이 授權되어 있는 指定銀行(nominated bank)인 支給銀行이 信用狀上에 指定된다는 點,一般的으로 換어음의 發行條件은 없는 것이 原則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指定된 支給銀行을 어음支給人(drawee)으로 하는 一覽拂어음(sight draft)의 發行條件이 明示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點, 一覽支給信用狀에 의한 去來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買入(negotiation)이 認定되지 않는다는 點 등을 指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一覽支給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言及한다.

### (1) 一覽支給信用狀의 特性

#### ① 使用方式의 表示

1983年 規則 制11條 a項의 規定에 따라 一覽支給信用狀의 文面에는 반드시 그 使用方式이 一覽支給方式이라는 趣旨의 文言, 예를 들면

“available by sight payment” 또는 이와 類似한 文言(available by payment at sight 등)이 明示되어야 한다.<sup>3)</sup>

## ② 指定銀行의 有無

1983年 規則 制11條 b項의 規定에 따라 一覽支給信用狀에는 一覽支給이 授權되어 있는 支給銀行이 반드시 指定되어야 한다.<sup>4)</sup> 다시 말하면 一覽支給信用狀의 文面에는 指定銀行이 明示되어 있으며, 그 指定銀行은 一覽支給이 授權된 支給銀行으로서 實際로 一覽支給을 行하게 된다.

一般的으로 그러한 支給銀行은 “available with ○○○ Bank”라는 方法으로 指定되며, 受益者는 그렇게 指定된 ○○○銀行에서만 그 一覽支給信用狀을 使用할 수 있다. 따라서 一覽支給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는 支給銀行은 受益者가 接受한 一覽支給信用狀을 使用할 對象銀行이다.

一覽支給信用狀에서 支給銀行으로 指定될 수 있는 銀行은 開設銀行, 通知銀行 및 其他의 第三銀行이며, 그 중 어느 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되느냐에 따라 各信用狀의 有用性(availability) 및 效力에는 差異가 생긴다.<sup>5)</sup> 왜냐하면 支給銀行의 所在地가 그 信用狀의 有效期間 終了地(place of expiry)가 되며, 혹시 어음發行條件이 明記된 경우라면 支給銀行을 어음支給人으로 하는 換어음을 發行케 하는 條件이 明示되기 때문이다.

輸出地 所在의 通知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되는 경우에는, 그 信用狀의 有效期間 終了地가 通知銀行의 所在地인 輸出地로, 혹시 換어음이 發行된다면 어음支給人은 通知銀行으로 明示되므로 문제가 發生하지 않는다.

그러나 開設銀行 또는 外國의 第三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된 一

3) ICC Publication No. 416 (1986. 4), p.26, pp.40-43, p.59 및 p.76; 朝岡良平, 逐條解說 信用狀 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p.117.

4) ICC Publication No. 416, p.25, p.59 및 p.76.

5) ICC Publication No. 416, p.76.

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一覽支給信用狀을 接受한 受益者は 상당한 注意를 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信用狀의 有效期間 終了地는 開設銀行의 所在地 또는 第三銀行의 所在地인 外國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信用狀에 의거하여 受益者が 發行하는 換어음의 支給人은 外國에 所在하는 開設銀行 또는 第三銀行이기 때문이다.

受益者が 輸出物品을 積送한 후에 一覽支給을 받기 위한 書類, 경우에 따라서는 換어음과 書類를 信用狀의 有效期日(date of expiry) 및 書類提示期間<sup>6)</sup> 以內에 外國所在의 支給銀行에 提示하기란 事實上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어음發行條件의 有無

一覽支給信用狀에는 어음發行條件이 없는 것이 原則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음發行條件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어음發行條件이 있는 경우에는 一覽拂어음(sight draft)을 發行하는 條件이며, 그 어음의 支給人(drawee)은 信用狀에 의해 指定된 支給銀行이어야 한다.<sup>7)</sup>

다시 말하면 一覽支給信用狀에 의한 去來에 있어서는 受益者が 換어음을 發行하지 않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만을 指定된 支給銀行에 提示하고서 바로 金錢의 支給을 받는 것이一般的이지만, 때로는 一覽拂어음을 發行하여 그것을 信用狀에서 要求하는 商業書類와 함께 支給銀行에 提示하고서 一覽拂어음의 支給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sup>8)</sup> 一覽拂어음을 發行해야 하는 경우, 上述한 바와 같이 支給銀行을 어음支給人으로 해서 發行하게 하는 條件이一般的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換어음의 發行은 稅法上 印紙稅의 課稅對

6) ICC 1983年 規則 第47條 a項의 規定에 따라 各信用狀上에 明記되는 期間 으로서 運送書類의 發行日字後의 一定期間을 말하며, 受益者は 그 期間 內에 支給・引受・買入을 위한 書類의 提示를 해야 한다.

7) ICC Publication No. 416, p.26, p.60 및 p.76;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pp.26-27.

8) 韓國貿易學會, 『貿易學會誌』, 第9卷, 1984. 2, p.155; 英國, 카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 토후국에서 開設된 支給信用狀에는 一覽拂어음 發行 條件이 있다.

象이 되므로 그러한 課稅를 피하기 위하여 換어음의 發行을 要求하지 않는 一覽支給信用狀이 유럽을 中心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sup>9)</sup>

#### ④ 買入의 認定與否

一覽支給信用狀은 原則적으로 買入(negotiation)이 認定되지 아니하는 信用狀이다.<sup>10)</sup> 信用狀統一規則에는 “書類의 買入”이라는 概念이 없으므로 換어음의 發行을 要求하지 아니한 一覽支給信用狀에 의거해서 具備한 書類를 受益者가 支給銀行이 아닌 自己의 去來銀行에 差入하더라도, 差入받은 銀行이 信用狀統一規則에서 말하는 買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換어음의 發行을 要求하고 있는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라 하더라도, 一覽支給信用狀은 買入(negotiation)을 認定하고 있지 아니한 信用狀이기 때문에, 中間銀行은 信用狀統一規則에 의한 保護를 받게 되는 買入銀行(negotiating bank)의 자격으로 그 換어음을 買入할 수는 없다.<sup>11)</sup>

우리 나라와 日本의 銀行間에 있어서는 換어음이 發行되는 一覽支給信用狀과 後述하려는 買入信用狀과를 엄격히 區別하지 않고, 買入을 서로 認定하고 있는 慣習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指定된 支給銀行을 開設銀行 자신으로 하는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非指定銀行인 中間銀行은 信用狀統一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는 買入銀行의 權利를 주장할 수 있는 立場에 설 수 없으므로, 혹시 自身의 危險負擔으로 買入을 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中間銀行은 開設銀行에 대하여 正式의 償還請求權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⑤ 開設銀行의 確約內容

##### 가. 取消不能信用狀의 경우

取消不能의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1983年 規則 第10條 a項 (i) 號의 規定에 따라 開設銀行은 信用狀의 諸條件을 充足시키는 明記된

9) 東京銀行, 前掲書, p.55;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p.26.

10) 上掲書, p.51; ICC Publication No. 415, 1985. 2, p.29; ICC Publication No. 305, 1978. 5, p.26.

11) 上掲書, p.51; ICC Publication No. 415, 1985. 2, p.29; ICC Publication No. 305, 1978. 5, p.26.

書類가 提示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支給을 행하는 것, 또는 支給이 행해지는 것을 確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開設銀行의 確約內容은 上記의 前提條件이 充足된다면, 開設銀行 자신이 支給銀行이라면 直接支給을 행하겠다는 確約이며, 開設銀行 이외의 他銀行이 支給銀行인 경우에는, 當該銀行에 의해 支給이 행해지는 것을 開設銀行이 確約하는 것이다. 따라서 當該銀行이 支給을 행하지 아니한 때는 開設銀行 자신이 支給을 行할 義務가 있다.

#### 나. 取消可能信用狀의 경우

取消可能信用狀은 受益者에 대한 事前通知 없이 어느 時點에서나 開設銀行에 의한 取消 또는 條件變更이 可能한 信用狀이기 때문에, 取消可能의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取消不能의 一覽支給信用狀에서와 같은 開設銀行의 確約은 없다.

그렇지만 取消可能의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 있어서도, 1983年 規則 第9條 b項 (i)號에 規定된 바와 같이, 開設銀行 이외의 支給銀行이 그 信用狀의 取消 또는 條件變更의 通知를 接受하기에 앞서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와 相換으로 一覽支給을 行했다면, 開設銀行은 그 支給銀行의 支給金을 償還해 주어야 할 義務를 진다.

#### (2) 一覽支給信用狀의 使用方式

一覽支給信用狀의 使用方式은 一覽支給方式이며, 一覽支給方式에 의한 貿易代金의 決済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 ① 要求書類의 提示 및 一覽支給依賴

一覽支給信用狀은 貨換信用狀의 一種이므로 信用狀에 의한 約付를 받기 위해서 提示해야 하는 書類의 明細가 반드시 信用狀條件으로 信用狀上에 明示된다. 따라서 受益者は 一覽支給信用狀에 의한 約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다시 말하여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는 要求書類를 具備해야 한다. 이렇게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要求書類가 具備되면, 受益者は 信用狀上에 明示되어 있는 有效期日<sup>12)</sup>(expiry date) 및 書類提示期間<sup>13)</sup> 以內에 그 要求書類를 信用狀

上에 指定되어 있는 指定銀行인 支給銀行에 提示하고 一覽支給을 依賴한다.

“一覽支給”(sight payment)이란 信用狀에서 提示를 要求한 書類가 提示되고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경우, 그러한 書類가 提示되는 時點에서 즉시 一定한 金額의 支給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一覽支給信用狀의 特性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換어음이 發行되지 않지만 때로는 어음發行條件이 信用狀上에 明示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受益者가 어음發行條件에 合致하는 換어음을 發行하여 要求書類와 함께 그것을 支給銀行에 提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음發行條件은 指定銀行을 어음支給人으로 하는 一覽拂어음을 發行케 하는 條件이一般的이다.

## ② 書類의 審查 및 一覽支給

一覽支給의 依賴를 받은 支給銀行은 1983年 規則 第15條의 規定에 따라相當한 注意를 다하여(with reasonable care) 提示된 書類의 審查를 행한다. 이러한 書類의 審查는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가, 다시 말하여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는가를 確認하기 위한 것이며,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고 있다고 判斷되는 경우 支給銀行은 그 時點에서 바로 支給을 行하게 된다.

이처럼 支給銀行에 의한 一覽支給이 행해지면, 受益者인 輸出業者는 輸出代金을 回收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음發行條件이 없는 一覽支給信用狀에 의거하여, 換어음을 發行함이 없이 一覽支給을 받은 輸出業者는 支給받은 金錢을 다시 반환해야 할 危險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換어음없이 一覽支給이 행해졌기 때문에 어음의 不渡로 인한

- 
- 12) ICC 1983年 規則 第46條 a項 및 b項의 規定에 따라 모든 信用狀은 支給, 引受 또는 買入을 위한 書類提示의 最終日字인 有效期日을 반드시 明示해야 한다.
  - 13) ICC 1983年 規則 第47條 a項의 規定에 따라 運送書類의 提示를 要求하는 모든 信用狀은 有效期日과는 별도로 支給, 引受 또는 買入을 위해 書類를 提示해야 하는 特定의 期間인 書類提示期間을 반드시 明示해야 한다.

償還請求(recourse)의 可能性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一覽弗어음 發行條件의 一覽支給信用狀에 의거하여 換어음을 發行하고 그것을 要求書類와 함께 어음支給人으로 指定된 支給銀行에 提示한 후에 一覽支給을 받은 輸出業者는, 어음의 不渡로 因한 債還請求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本人의 見解로는 어음支給人으로 指定된 支給銀行이 아무런 條件 없이 合當한 一覽支給을 行한 경우에는, 換어음의 支給이 이미 完了된 受益者 발행의 換어음은 不渡處理가 될 수 없다는 觀點에서, 어음의 不渡로 인한 債還請求의 可能性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支給銀行이 一覽支給을 행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條件을 불인 條件附支給이 행해진 경우라면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支給銀行은 開設銀行과 確認銀行이 아닌 한 1983年 規則 第11條 c項의 規定에 의거해서, 비록 信用狀條件에一致하는 書類가 경우에 따라 그러한 書類와 一覽拂어음이 함께 提示된 때라도 受益者要請의 一覽支給을 拒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信用狀이 取消不能信用狀이라면, 1983年 規則 第10條 a項(i號)의 規定에 따라 原初的 支給責任을 지는 開設銀行으로부터 一覽支給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書類의 送付 및 債還請求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은행이라면, 信用狀條件에一致하는 書類와 相換으로 一覽支給을 행한 支給銀行은 1983年 規則 第16條 a項의 規定에 따라 支給代金의 債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支給을 행한 書類를 開設銀行에 送付하고 債還을 要請하여 事前에 合意된 대로 債還을 받게 된다. 만일 開設銀行의 預金이 支給銀行에 預置되어 있다면 그 開設銀行의 預金計定을 借記하는 方法으로 債還을 받게 된다. 특히 세계 100여개 國家의 2,000여 外國換銀行이 요즈음 모든 通信業務를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世界銀行間 金融電信網) 시스템에 의하여 處理하고 있으므로, 支給銀行은 一覽支給을 行함과 동시에

SWIFT 시스템을 이용하여 償還을 請求하고 또한 즉시 償還을 받게 된다.

#### ④ 開設銀行의 書類審查 및 償還

指定된 支給銀行으로부터 書類를 接受한 開設銀行은 역시 1983年 規則 第15條의 規定에 의거, 接受된 書類를 審查해야 한다. 그 결과 書類에 不一致事項(discrepancies)이 없다고 判斷되면 支給銀行에게 즉시 償還을 실시한다.

그러나 審查 결과 그 書類에 不一致事項이 있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1983年 規則 第16條 b~e項의 規定에 따라, 開設銀行은相當한 期間 (reasonable time, 보통 7日) 以內에 그 書類의 引受를 拒絕하고 클레임<sup>14)</sup>을 제기할 것인가의 與否를 決定해야 한다. 또 그 書類의 引受를 拒絕하기로 決定한 경우에는 위의 期間內에 신속한 通信手段으로 書類引受拒絕의 意思를 書類送付銀行(remitting bank)인 支給銀行에 通知해야 하며, 이러한 電信通知文 중에는 반드시 書類引受拒絕의 事由가 되는 書類의 不一致事項을 明示해야 하고, 또 그 書類의 行方(保管中 또는 返送中)을 밝혀야 한다.

#### ⑤ 書類의 來到通知 및 補償請求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를 接受하고 審查를 마친 開設銀行은 信用狀에서 要求한 書類가 來到하였다는 事實을 開設依賴人인 輸入業者에게 通知하고, 開設銀行의 償還金(輸入業者의 輸入代金)의 補償을 請求한다. 이 때에 適用되는 換率은 輸入어음決濟率로서 開設銀行의 資金負擔에 따른 金利가 포함된 換率이다.

#### ⑥ 書類의 引受 및 輸入代金의 決濟

書類의 來到通知에 접한 輸入業者는 來到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가의 與否를 確認한다. 그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경우에는, 信用狀開設依賴人인 輸入業者는 開設銀行과의 約定대로 輸入代金을 支給하고 그 書類를 引受한다.

14) 送付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지 아니하다는 클레임이며, 이러한 클레임의 提起는 書類引受의 拒絕과 償還의 拒絕을 뜻한다.

그렇지만 來到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지 않는다고 判斷되고 또 그러한 瑕疵있는 書類를 引受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輸入業者は 그 瑕疵있는 書類의 引受를 拒絕하고, 또 開設銀行의 補償請求도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貨換信用狀의 一種인 一覽支給信用狀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가 提示되는 경우에 한하여, 信用狀에 의한 約定가 행해지는 信用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開設銀行 또는 支給銀行이 信用狀條件에 一致하지 아니 하는 書類와 相換으로 信用狀에 의한 約定를 行했다면 그러한 行爲는 不當하기 때문에, 開設依賴人인 輸入業者は 그러한 瑕疵있는 書類의 引受를 拒絕할 수 있고, 또한 開設銀行의 償還金 補償請求도 拒絕할 수 있는 것이다.

## 2. 延支給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延支給信用狀”(deferred payment credit)이란 延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한 信用狀(credit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을 말하는데, 그것은 受益者가 換어음을 發行하지 않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만을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는 支給銀行에 提示하면 그러한 書類와 相換으로 信用狀의 條件에 따라 決定되는 장래의 特定期日에 一定한 金錢이 支給되는 信用狀이다.<sup>15)</sup>

이러한 延支給信用狀의 特性으로는 信用狀上에 延支給方式으로 使用可能하다는 趣旨의 文言이 반드시 明示된다는 點, 延支給이 授權되어 있는 指定銀行(nominated bank)인 支給銀行이 信用狀上에 指定된다는 點, 換어음의 發行條件이 없다는 點, 買入이 認定되지 아니한다는 點 등을 指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延支給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서술한다.

### (1) 延支給信用狀의 特性

#### ① 使用方式의 表示

---

15) 韓柱燮, 最新 信用狀論, 東星社, 1987, p.178.

1983年 規則 第11條 a項의 規定에 따라 延支給信用狀의 文面에는 반드시 그 使用方式이 “延支給方式”이라는 趣旨의 文言, 예를 들어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또는 이와 類似한 文言(available by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등)이 明示되어야 한다.<sup>16)</sup>

그리고 이러한 文言 뒤에는 延支給이 행해지는 特정의 期日을 決定하는 信用狀條件, 예를 들어 “at 30 days after date of shipment(船積日字後 30日拂)” 또는 “at 15 days after presentation of documents (書類提示後 15日拂)” 등의 條件이 明示된다.<sup>17)</sup>

한편 ICC 制定의 標準樣式 이외의 樣式으로 發行된 延支給信用狀에는 “payment at the counter of ○○○ bank at xxx days after the date of xxx against the documents”라는 文言이 表示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文言은 “deferred payment”라는 用語를 使用하지 않고서도 그 信用狀이 延支給信用狀임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解釋해야 한다.<sup>18)</sup>

## ② 指定銀行의 有無

1983年 規則 第11條 b項의 規定에 의하면, 延支給信用狀에는 延支給이 授權되어 있는 支給銀行이 반드시 指定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延支給信用狀의 文面에는 指定銀行이 明示되어 있으며, 그 指定銀行은 延支給이 授權된 支給銀行으로서 實際로 延支給을 행하게 된다. 一般的으로 그러한 支給銀行은 “available with ○○○ bank”라는 方法으로 指定되며, 受益者は 那樣에 指定된 ○○○ 銀行에서 그 延支給信用狀을 使用할 수 있다.

延支給信用狀에서 支給銀行으로 指定될 수 있는 銀行은 開設銀行, 通知銀行 및 其他의 第三銀行이며, 그 중에서 어느 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되느냐에 따라 各信用狀의 有用性(availability) 및 效力은 달라진다.<sup>19)</sup>

16) ICC Publication No. 416, p.26, pp.40-43, p.59 및 pp.76-77; 朝岡良平, 前掲書, p.121.

17) ICC Publication No. 416, p.26 및 p.60;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p.26.

18) 東京銀行, 前掲書, p.53.

### ③ 어음發行條件의 有無

延支給信用狀에는 어음發行條件이 없다. 다시 말하여 延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換어음을 存在하지 않는다.<sup>20)</sup> 따라서 受益者は 換어음을 發行하지 않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만을 支給銀行에 提示하고서 信用狀의 條件에 따라 決定되는 장래의 特定期日에 支給을 받게 된다.

### ④ 買入의 認定與否

延支給信用狀은 買入(negotiation)이 認定되지 않는 信用狀이다.<sup>21)</sup> 앞서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信用狀統一規則에는 “書類의 買入”이라는 概念은 없으므로, 換어음의 發行을 要求하지 아니하는 延支給信用狀에 의거해서 具備한 書類를 受益者が 支給銀行이 아닌 自己의 去來銀行에 差入하더라도, 差入받은 銀行이 信用狀統一規則에서 말하는 買入을 행할 수 없는 것은 當然하다.

### ⑤ 開設銀行의 確約內容

#### 가. 取消不能信用狀의 경우

1983年 規則 第10條 a項 (ii)號에서 “信用狀이 延支給을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信用狀의 條件에 따라 決定되는 期日에 支給하는 것 또는 支給이 行해지는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開設銀行 자신이 支給銀行인 경우에는, 自身이 信用狀에 의해 정해지는 特定의 期日에 支給을 行하는 것을 確約한다. 또 開設銀行 이외의 他銀行이 支給銀行인 경우에는, 當該銀行에 의해 그러한 支給이 行해지는 것을 開設銀行이 確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支給銀行으로 指定된 他銀行이 信用狀의 條件에 따라 決定되는 特定의 期日에 支給을 行하지 아니한 때는, 開設銀行은 自身이 그러한 支給을 行해야 한다는 義務가 있다.

19) ICC Publication No. 416, 1986. 4, pp.76-77.

20) 東京銀行, 前掲書, p.53; ICC Publication No. 416, 1986. 4, p.26 및 pp.76-77;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p.26.

21) 東京銀行, 上掲書, p.50; ICC Publication No. 415, 1985. 2, p.29.

#### 나. 取消可能信用狀의 경우

取消可能의 延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원래 取消不能의 延支給信用狀에서와 같은 開設銀行의 確約은 없지만, 開設銀行 이외의 銀行이 支給銀行인 경우에 있어서 取消 또는 條件變更의 通知가 그 支給銀行에 到着하기 전에 그 支給銀行에 의해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의 受理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支給銀行은 開設銀行에 대하여 償還請求權을 取得하기 때문에, 그 書類의 受理는 開設銀行의 書類受理와 同一한 效力を 發生하는 결과(1983年 規則 第9條 b項 ii號 參照), 開設銀行은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確約義務를 負擔하는 것이 된다.

#### (2) 延支給信用狀의 使用方式

延支給信用狀의 使用方式은 延支給方式이며, 延支給方式에 의한 貿易代金의 決濟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 ① 要求書類의 提示 및 延支給要請

延支給信用狀도 貨換信用狀의 一種이므로 信用狀에 의한 約定을 받기 위해서 提示해야 하는 要求書類의 明細가 반드시 信用狀條件으로 信用狀上에 明示된다. 따라서 受益者가 延支給信用狀에 의한 約定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要求書類를 具備해야 한다. 이렇게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要求書類가 具備되면, 受益者는 信用狀上의 有效期日 및 書類提示期間 이내에 그 要求書類를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는 支給銀行에 提示하고 延支給을 要請한다.

“延支給”(deferred payment)이란 要求書類가 提示되고 그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경우, 信用狀條件에 따라 決定되는 特定의 期日에 그러한 書類와 相換으로 一定한 金錢의 支給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延支給信用狀의 特性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延支給信用狀에는 換어음發行의 條件이 없으므로, 受益者는 延支給을 받기 위하여 換어음을 發行할 必要가 없다.

##### ② 書類의 審查 및 延支給約束

延支給의 要請을 받은 支給銀行은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상당한 注意를 다하여 提示된 書類를 審查해야 한다. 그 결과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한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支給銀行은 그 書類를 受理하고 그것을 開設銀行에 送付한다.

開設銀行 이외의 銀行이 支給銀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支給銀行은 開設銀行의 指示가 없으면 書類를 受理하더라도 受益者에 대하여 延支給約束(deferred payment undertaking)을 행한 것은 아니며, 다만 受理한 書類를 開設銀行에 送付하고 支給期日이 到來한 때에 開設銀行에 의한 償還이 番外 없이 행해지는 상황에서는, 受益者에 대한 義務로서가 아니라, 開設銀行으로부터의 受託事務의 履行으로서 支給을 행하는 것이다.<sup>22)</sup> 따라서 이 경우는 受益者가 開設銀行에 의한 延支給約束을 依賴하면서 書類를 支給銀行에 提示한 것으로 된다.

한편 支給銀行에 대한 延支給約束의 指示가 附加되어 있는 延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支給銀行은 그러한 指示에 따를 意思가 있으면, 開設銀行에 대한 與信으로서 그 指示에 따른다. 이 경우 支給銀行이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를 受理한다면, 그러한 書類의 受理만으로는 延支給約束의 債務를 負擔하는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受益者는 그 銀行이 延支給約束을 행하는 意思下에서 書類를 受理한 것으로 推測할 可能性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延支給信用狀에 기하고 있는 書類를 受理하려고 하는 支給銀行은, 實務적으로는 書類의 受理가 延支給約束을 하는 意思下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受益者와의 사이에 明確하게 해 두어야 한다. 支給銀行이 信用狀의 確認을 행한 確認銀行이라면, 延支給約束에 관한 開設銀行의 지시의 有無에 관계없이 支給銀行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를 受理한다면 延支給約束을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延支給約束은 開設銀行의 依賴에 의해서 受益者에 대한 債務를 負擔하는 行爲이고, 後述하는 引受信用狀의 引受銀行이 期限附어 음의 引受에 의해서 負擔하는 債務에 있어서와 同一한 정도의 危險을

---

22) 東京銀行, 前掲書, p.54.

負擔하는 것이 되므로, 延支給約束을 依賴받은 銀行이 延支給約束을 행한 경우에는, 引受手數料와 거의 同率의 延支給手數料를 依賴者인 開設銀行 또는 手數料 受益者負擔의 特別한 指示가 있는 경우에는 受益者에게 請求하는 것이 一般化되어 있다.<sup>23)</sup>

### ③ 書類의 送付 및 延支給

延支給信用狀의 경우, 一般的으로 輸出國 所在의 通知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되므로 受益者에 의해 提示된 書類를 受理한 支給銀行은 그 書類를 開設銀行에 送付한다. 그리고 開設銀行의 要求에 따라 延支給約束을 행한 支給銀行은 信用狀條件에 따라 決定되는 장래의 支給期日에 約束대로 支給을 행하고 開設銀行에 대하여 그 償還을 請求한다.

한편 受益者로부터 書類를 受理하였지만 延支給約束을 행하지 아니한 支給銀行은, 上述한 바와 같이 開設銀行으로부터의 受託事務의 履行으로서 支給을 행한다. 다시 말하여 延支給約束을 행하지 아니한 支給銀行은 當該 延支給信用狀의 條件에 따라 決定되는 장래의 支給期日에 延支給資金을 開設銀行으로부터 受領하여 受益者인 輸出業者에게 支給을 행한다.

輸出業者가 延支給信用狀을 받아 그것에 의해 輸出代金을 回收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히 다음 事項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첫째, 輸出國 所在의 通知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되어 있는가를 確認해야 한다. 만일 開設銀行 또는 外國의 第三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되어 있는 延支給信用狀이라면, 受益者인 輸出業者에게 不利하기 때문이다.

둘째, 輸出國 所在의 通知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되어 있는 延支給信用狀이라 하더라도, 그 支給銀行에게 延支給約束(deferred payment undertaking)의 權限이 附與되어 있는가를 確認해야 한다. 支給銀行으로 指定된 銀行에는 延支給의 權限은 一般的으로 附與되지만,

---

23) 東京銀行, 上掲書, p.55.

延支給約束의 權限은 別途로 附與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支給銀行은 開設銀行으로부터 延支給約束의 權限을 别途로 附與받은 경우에만 그 權限을 行事할 수 있는 것이며, 延支給約束의 權限을 附與받지 못한 支給銀行은 正式的 延支給約束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支給銀行에게 延支給約束의 權限이 附與되어 있는 延支給信用狀의 경우라도, 受益者인 輸出業者는 要求書類를 提示한 후 반드시 延支給約束의 文書를 支給銀行으로부터 入手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信用狀에 의거한 支給銀行의 書類受理가 바로 延支給約束을 행한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延支給約束의 權限을 附與받은 支給銀行은 延支給約束을 行함이 없이 다만 書類만을 受理할 수도 있는 것이다.

#### ④ 開設銀行의 書類審查 및 延支給金의 償還

支給銀行으로부터 書類를 接受한 開設銀行도 다시 그 書類를 審查해야 한다.<sup>24)</sup> 그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여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고 있다고 判斷되면 開設銀行은 그 書類를 引受한다. 開設銀行이 支給銀行에게 延支給約束(deferred payment undertaking)의 權限을 附與하였는데, 그러한 權限을 附與받은 支給銀行이 延支給約束을 행하였다면, 開設銀行은 그 支給銀行의 延支給金을 償還해 줄 義務가 있다.<sup>25)</sup> 또한 開設銀行은 延支給約束을 行함이 없이 書類만을 受理하여 送付한 후에 授權된 支給을 행한 支給銀行에 대하여도 償還의 義務를 진다.<sup>26)</sup>

한편 延支給信用狀의 開設銀行은 延支給을 행하는 支給銀行을 自行으로 하든가 또는 他銀行으로 하든가에 관계없이, 또 他銀行에게 書類를 受理하고 延支給約束을 행하도록 授權하였는가의 與否에 관계없이, 그 信用狀이 取消不能信用狀이라면 信用狀條件에 合致하는 書類를 受理하면 당연히 延支給約束을 행하게 되는 立場에 서게 된다.<sup>27)</sup>

24) ICC 1983年 規則 第15條 參照.

25) ICC 1983年 規則 第16條 a項 參照.

26) ICC 1983年 規則 第11條 d項 參照.

#### ⑤ 書類의 來到通知 및 債權保全措置

信用狀條件에 合致하는 書類를 接受하고 審查를 마친 開設銀行은 信用狀에서 要求한 書類가 來到하였다는 事實을 開設依賴人에게 通知하고, 그 書類의 引渡에 앞서 銀行의 損失을 預방하기 위한 事前措置인 債權保全 措置를 강구한다. 왜냐하면 支給銀行에서 信用狀條件에一致하는 書類를 受理하여 送付해 왔고 그 書類의 審查結果 그것이 信用狀條件에一致하는 것으로 判明된 立場에서는, 延支給을 授權한 開設銀行은 支給銀行에 의한 延支給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하는데, 장래의 支給期日이 到來하기 전에 혹시 受益者인 輸出業者가 破産하거나 財政狀態의 惡化로 輸入代金을 決濟할 수 없게 된다면, 開設銀行은 被害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 ⑥ 書類의 引渡 및 輸入代金의 決濟

書類의 來到通知에 접한 輸入業者는 來到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一致하는지를 確認하고,一致하는 경우에는 그 書類를 引渡받기 위하여 開設銀行의 債權保全 措置에 응한다. 開設銀行은 債權保全 措置가 강구되어 同銀行의 被害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 來到된 書類를 비로소 輸入業者에게 引渡한다.

開設銀行으로부터 書類를 引渡받은 輸入業者는 그 書類에 의거 運送人으로부터 輸入物品을 수령하여 處分하고, 延支給의 期日에 輸入代金을 開設銀行에 決濟한다. 信用狀條件에一致하지 아니하는 書類, 즉 瑕疵있는 書類가 來到된 경우, 信用狀開設依賴人인 輸入業者가 來到된 書類의 引受를 拒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III. 引受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引受信用狀”(acceptance credit)이란 前述한 바와 같이 引受方式으

---

27) 東京銀行, 前揭書, pp.53-54.

로 使用可能한 信用狀으로서, 受益者가 期限附어음을 發行하여 그것을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와 함께 어음支給人에게 提示하면 어음의 引受와 滿期支給이 행해지는 信用狀을 말한다. 이러한 引受信用狀의 特性으로는 信用狀의 文面에 반드시 引受方式으로 使用可能하다는 趣旨의 文言이 明示된다는 점, 引受가 授權되어 있는 引受銀行(accepting bank)이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다는 점, 期限附어음 發行條件이 明記되어 있다는 점, 原則的으로 買入(negotiation)이 認定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指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引受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言及한다.

## 1. 引受信用狀의 特性

### (1) 使用方式의 表示

1983年 規則 第11條 a項의 規定에 따라 引受信用狀에는 반드시 그 使用方式이 “引受方式”이라는 趣旨의 文言, 예를 들어 “available by acceptance” 또는 이와 類似한 文言이 明示되어야 한다.<sup>28)</sup>

### (2) 指定銀行의 有無

1983年 規則 第11條 b項의 規定에 따라 引受信用狀에는 換어음을 引受가 授權되어 있는 指定銀行(nominated bank)인 引受銀行(accepting bank)이 반드시 指定되어야 한다.<sup>29)</sup> 다시 말하여 引受信用狀의 文面에는 指定銀行이 明記되어야 하며, 그 指定銀行은 受益者 發行의 換어음을 引受할 權限을 부여받은 引受銀行으로서 實際로 어음의 引受를 행하고 그 어음의 滿期日에 어음代金을 支給한다.

一般的으로 그러한 引受銀行은 “available with ○○○ bank”라는 方法으로 信用狀上에 明示되며, 受益者は 그렇게 指定된 ○○○ 銀行에서 그 引受信用狀을 使用할 수 있다. 引受信用狀에서 引受銀行으로

28) ICC Publication No. 416, p.26, p.59 및 p.77; ICC Publication No. 323, 1978. 12, p.6, p.8 및 p.9; 朴大衛, 信用狀, 法文社, 1983, pp.563-564.

29) ICC Publication No. 416, p.25, p.59 및 p.77.

指定될 수 있는 銀行은 開設銀行, 通知銀行 및 其他의 第三銀行이며, 그 중 어느 銀行이 引受銀行으로 指定되느냐에 따라 각 信用狀의 有用性 및 效力은 相異하다.<sup>30)</sup> 왜냐하면 指定된 引受銀行의 所在地가 그 信用狀의 有效期間 終了地가 되며, 또한 引受銀行으로 指定된 銀行을 어음支給人으로 하는 어음發行條件이 規定되기 때문이다.

輸出地 所在의 通知銀行이 支給銀行으로 指定되는 경우에는, 그 信用狀의 有效期間 終了地가 通知銀行의 所在地인 輸出地이고, 어음支給人은 通知銀行으로 明示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開設銀行 또는 外國의 第三銀行이 引受銀行으로 指定된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輸出者인 受益者에게 不利하므로 留意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引受信用狀의 有效期間 終了地는 開設銀行의 所在地 또는 第三銀行의 所在地인 外國이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引受信用狀에 의거하여 受益者가 發行하는 換어음의 支給人은 外國에 所在하는 開設銀行 또는 第三銀行이기 때문이다. 受益者로서는 外國에 所在하는 指定銀行인 引受銀行 으로부터 信用狀의 有效期日 및 書類提示期間 이내에 어음의 引受를 받아내기란 사실상 용이하지 않으므로 留意해야 하는 것이다.

### (3) 어음發行條件의 有無

引受信用狀에는 어음發行條件이 있으며, 그 條件은 指定銀行(引受銀行)을 어음支給人으로 하는 期限附어음(usance draft 또는 time draft) 을 發行하라는 것이다.<sup>31)</sup> 1983年 規則 第11條 b項의 規定에 의하면,前述한 바와 같이 銀行만을 引受銀行으로 指定하고 그 銀行을 어음支給人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實際로는 信用狀開設依賴人을 어음支給人으로 指定하는 引受信用狀도 있다. 取消不能信用狀에 의한 開設銀行의 確約內容을 規定하고 있는 1983年 規則 第10條 a項은 開設依賴人을 어음支給人으로 하는 경우도 包含하여 引受信用狀에 관한 開設銀

30) ICC Publication No. 416, p.77.

31) ICC Publication No. 416, p.26 및 p.77; Publication No. 323, 1978. 12, p.9; C.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8th ed., Stevens, 1986, p.357.

行의 確約의 内容을 同項의 (iii)號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sup>32)</sup>

#### (4) 買入의 認定與否

引受信用狀은 前述한 支給信用狀과 마찬가지로 買入이 認定되지 않는 信用狀이다.<sup>33)</sup> 물론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도 買入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므로, 輸出地에 있는 어느 中間銀行이 자신의 危險負擔으로 어음引受前의 買入을 행할 수는 있으나, 그 銀行은 授權된 買入銀行의 資格을 얻지는 못하기 때문에 信用狀統一規則(1983年 規則 第11條 d項)에서 認定하고 있는 開設銀行에 대한 正式의 償還請求權을 行使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4)</sup>

#### (5) 開設銀行의 確約內容

##### ① 取消不能信用狀의 경우

取消不能의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1983年 規則 第10條 a項(iii)號의 規定에 따라 開設銀行은 信用狀의 諸條件를 充足시키는 明記된 書類가 提示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受益者에 의해 發行된 換어음을 引受하는 것, 또는 그러한 換어음의 引受 및 滿期支給을 責任지는 것을 確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開設銀行의 確約內容은 上記의 前提條件이 充足된다면, 開設銀行 자신이 어음支給人으로 되어 있는 受益者 發行의 期限附어음을 引受하겠다는 確約이며, 또 開設銀行 이외의 他銀行 또는 開設依賴人이 어음支給人으로 되어 있는 受益者 發行의 期限附어음을 他銀行 또는 開設依賴人이 引受하고 滿期日에 支給하는 責任을 진다는 것을 開設銀行이 確約하고 있는 것이다.

##### ② 取消可能信用狀의 경우

32) 大韓商工會議所, 信用狀統一規則 第5次 改正案 說明會資料, 1993. 2, p.9;  
信用狀統一規則 第5次 改正試案(第9條 a, b項)에서는 開設依賴人을 어음支給人으로 하는 換어음을 發行할 수 없도록 規定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信用狀이 開設依賴人 앞으로 換어음을 發行하도록 規定한 경우에는 銀行은 그러한 換어음을 追加書類로만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33) 東京銀行, 前掲書, p.51; ICC Publication No. 305, 1978. 5, p.27; ICC Publication No. 415, 1985. 2, p.30.

34)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p.40.

取消可能의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取消不能의 引受信用狀의 경우에서와 같은 開設銀行의 確約은 成立되지 아니 한다. 그렇지만 取消可能의 引受信用狀의 경우에 있어서도, 1983年 規則 第9條 b項 (i)號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開設銀行 이외의 引受銀行이 그 信用狀의 取消 또는 條件變更의 通知를 받기에 앞서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와 相換으로 受益者 發行의 期限附어음을 引受하였다면, 開設銀行은 그 引受銀行에 대한 償還義務를 지는 것이다.

## 2. 引受信用狀의 使用方式

引受信用狀의 使用方式은 引受方式이며, 引受方式에 의한 貿易代金의 決濟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 (1) 要求書類의 具備 및 期限附어음의 發行

引受信用狀도 貨換信用狀의 一種이므로 그 信用狀에 의한 納付를 받기 위하여 제시해야 하는 書類의 明細가 信用狀條件으로 信用狀上에 반드시 明示된다. 따라서 受益者인 輸出業者は 引受信用狀에 의한 納付를 받으려면 우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要求書類를 具備해야 한다. 또한 受益者는 信用狀上의 어음發行條件에 合致하는 期限附어음을 發行해야 한다. 期限附어음의 支給人은 前述한 바와 같이 指定된 引受銀行임이 原則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開設依賴人을 어음支給人으로 明示한 引受信用狀도 있으므로 留意해야 한다.

### (2) 書類의 提示 및 期限附어음의 引受要請

受益者인 輸出業者は 具備書類를 指定銀行인 引受銀行에 提示하고 期限附어음의 引受를 要請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引受銀行으로는 보통 通知銀行이 指定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開設銀行 또는 外國의 第三銀行이 引受銀行으로 指定되기도 하므로 受益者는 信用狀上에 明示되어 있는 有效期日 및 書類提示期間 이내에 그 指定된 引受銀行에 書類를 提示하고 期限附어음의 引受를 要請해야 한다.

### (3) 書類의 審查 및 期限附어음의 引受

期限附어음의 引受를 要請받은 引受銀行은 함께 提示된 書類를

1983年 規則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相當한 注意를 다하여 審查한다. 이러한 書類의 審查를 행한 引受銀行은 審查書類가 信用狀條件에一致한다고 判斷되면 期限附어음을 대한 引受를 행하고, 引受된 期限附어음을 다시 受益者인 輸出業者에게 돌려준다.

引受된 期限附어음을 引受銀行으로부터 돌려받은 受益者(輸出業者)는 그 어음의 滿期日까지 기다려 引受銀行으로부터 어음代金을 支給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引受된 期限附어음을 그 滿期日 이전에 自己의 去來銀行 또는 他銀行에 割引賣却하여 輸出代金을 회수한다.

여기서 留意할 點은 開設銀行 및 確認銀行 이외의 引受銀行은 引受 할 것을 約定한 銀行이 아니므로, 비록 信用狀條件에一致하는 書類가 提示된 경우라 하더라도, 要請받은 期限附어음의 引受를 拒絕할 수도 있다는 點이다.<sup>35)</sup> 이처럼 期限附어음의 引受를 拒絕당한 受益者は 그 引受信用狀이 取消不能信用狀이라면, 1983年 規則 第10條 a項 (iii)號의 規定에 의거해서 開設銀行으로부터 그 어음의 引受를 받아 어음滿期日에 支給을 받을 수 있으므로 輸出代金의 회수는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어떠한 銀行이 어음상의 支給人으로서 換어음의 引受를 행했다면 그 銀行은 各國의 어음法上의 支給債務을 지게 되므로, 引受銀行 또는 開設銀行에 의해 引受된 期限附어음의 滿期支給은 사실상 보장된다. 따라서 一流銀行에 의해 引受된 期限附어음은 國內外의 金融市場에서 자유롭게 割引賣買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引受銀行이 自己가 引受한 어음을 割引買入하기도 한다.<sup>36)</sup> 또한 引受銀行은 自身이 割引買入한 引受어음을 어음의 滿期日 以前에 再割引(rediscounting)의 方式으로 賣却함으로써 資金化할 수도 있다.<sup>37)</sup>

#### (4) 書類의 送付 및 債還請求

35) ICC 1983年 規則 第11條 c項 參照.

36)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5th ed., The Ronald Press Co. (N.Y.), 1974, p.123.

37) *Ibid.*, p.124.

위와 같이 期限附어음의 引受를 행한 開設銀行 이외의 引受銀行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를 開設銀行에 送付한다. 그리고 自己가 引受한 期限附어음의 滿期日에 그 어음의 所持人에게 어음대금을 支給하고 開設銀行에 대하여 支給金의 償還을 請求하게 된다.

#### (5) 開設銀行의 書類審查 및 償還

開設銀行은 接受한 書類를 다시 審查하고 그 書類가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면, 즉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면 그 書類를 引受해야 한다. 또한 開設銀行은 引受銀行에 의해 引受된 期限附어음의 滿期日에 어음 대금을 引受銀行에 대하여 償還해야 한다.<sup>38)</sup>

#### (6) 書類의 來到通知 및 債權保全 措置

開設銀行은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는 書類의 來到事實을 開設依賴人인 輸入業者에게 通知하고, 그 書類의 引渡에 앞서 銀行으로서의 債權保全 措置를 강구한다. 왜냐하면 開設銀行으로서는 이미 引受銀行에 대한 償還債務가 發生하였는데, 혹시 開設依賴人の 財政狀態의 惡化로 因하여 受益者發行 期限附어음의 滿期日에 어음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면, 開設銀行에는 損失이 發生하기 때문이다.

開設銀行은 債權保全策으로 보통 別途의 어음을 徵求하고 別途의 擔保提供을 要求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特定金額의 預置를 要求한다. 만일 受益者發行 期限附어음의 支給人이 開設依賴人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書類의 引渡에 앞서 開設依賴人으로 하여금 그 期限附어음을 引受하도록 措置하는 것은 當然하다.

#### (7) 書類의 引渡 및 輸入代金의 決済

書類의 來到通知에 접한 輸入業者は 來到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지의 與否를 確認하고, 一致하는 경우에는 그 書類를 引渡받기 위하여 開設銀行의 債權保全 措置에 응한다. 開設銀行은 債權保全 措置가 강구되어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 來到된 書類를 輸入業者에게 引渡한다.

---

38) ICC 1983年 規則 第16條 a項 參照.

開設銀行으로부터 書類를 引渡받은 輸入業者는 그 書類中 運送書類를 運送人(carrier)에게 提示하고 輸入物品을 수령하여 輸入通關節次를 밟은 다음 그것을 輸入目的에 따라 處分한다. 한편 輸入業者が 輸入代金을 開設銀行에 決済해야 하는 時點은 受益者發行 期限附어음의 滿期日이다. 그러므로 開設銀行은 그 滿期日에 輸入業者로부터 輸入代金을 徵收하여 그 資金으로 引受銀行에 대한 償還을 實行한다고 말할 수 있다.

#### IV. 買入信用狀의 特性과 使用方式

“買入信用狀”(negotiation credit)이란 前述한 바와 같이 買入方式으로 使用可能한 信用狀(credit available by negotiation)으로서, 受益者가 換어음을 發行하고 그것에 信用狀에서 要求한 書類를 첨부하여 買入銀行(negotiating bank)에 提示하면 買入이 행해지는 信用狀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買入”(negotiation)이란 買入銀行이 換어음이나 書類를 受理하고 그 價額을 支給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9)</sup>

이러한 意味의 買入은 不特定 多數의 銀行에 許容되는 것이一般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特定의 銀行에만 그것이 制限的으로 許容되기도 한다.<sup>40)</sup> 이처럼 買入이 特定의 銀行에만 制限的으로 許容되는 信用狀을 우리는 制限信用狀(restricted credit), 特定信用狀(special credit) 또는 制限買入信用狀(restricted negotiation credit)이라 부르는데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信用狀을 “制限買入信用狀”이라 칭한다.

한편 不特定 多數의 銀行에 의한 買入이 許容되어 있는 信用狀, 다시 말하여 어느 銀行에서나 買入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銀行에게 買入의 權限이 부여되어 있는 信用狀을 우리는 開放信用狀(open credit),

39) 大韓商工會議所, 前掲資料, p.10.

40) ICC Publication No. 416, p.26.

普通信用狀(general credit) 또는 自由買入信用狀(freely negotiable credit)이라 부르는데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信用狀을 “自由買入信用狀”이라 칭한다.

以上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買入信用狀은 買入의 制限與否에 따라 制限買入信用狀과 自由買入信用狀으로 區分된다. 制限買入信用狀과 自由買入信用狀은 모두 買入方式으로 使用되는 信用狀이므로 共通點이 많지만 그들간에는 다소의 相異點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買入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을 究明함에 있어서 制限買入信用狀과 自由買入信用狀으로 區分하여 서술한다.

## 1. 制限買入信用狀의 特性 및 使用方式

“制限買入信用狀”(restricted negotiation credit)이란 前述한 바와 같이 買入이 特定의 銀行에만 制限의으로 許容되는 買入信用狀을 말한다.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한다면, 受益者가 換어음을 發行하고 그것에 信用狀指定의 書類를 첨부하여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는 指定銀行에 그것을 提示하면 그 指定銀行은 買入이 授權된 買入銀行으로서 買入을 행하게 되는 條件의 信用狀이 바로 制限買入信用狀이다.

이러한 制限買入信用狀의 特性으로는 信用狀의 文面에 반드시 買入方式으로 使用可能하다는 趣旨의 文言이 明示된다는 點, 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指定銀行인 買入銀行을 반드시 指定한다는 點, 信用狀의 文面에는 어음發行條件이 明示되며, 그 條件은 一覽拂어음과 期限附어음 중 擇一하여 發行토록 하는 條件이지만, 어음支給人은 指定된 買入銀行 이외의 銀行 또는 開設依賴人이 支給人으로 明示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指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制限買入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言及한다.

### (1) 制限買入信用狀의 特性

#### ① 使用方式의 表示

1983年 規則 第11條 a項의 規定에 따라 制限買入信用狀의 文面에는

반드시 買入方式으로 使用可能하다는 趣旨의 文言, 예를 들어 “available by negotiation” 또는 이와 類似한 文言이 明示되어야 한다.<sup>41)</sup>

## ② 指定銀行의 有無

1983年 規則 第11條 b項의 規定에 따라 制限買入信用狀의 文面에는 後述하는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와는 달리, 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買入銀行이 반드시 指定되어야 한다.<sup>42)</sup> 다시 말하여 制限買入信用狀上에는 반드시 買入銀行이 指定되어 있어야 하며, 그 買入銀行은 買入이 授權된 買入銀行으로서 實際로 買入을 행하는 銀行이다. 바로 이 점이 自由買入信用狀과 區別되는 制限買入信用狀의 特性이다.

一般的으로 그러한 買入銀行은 “available with ○○○bank”라는 方法으로 指定되며, 受益者는 그렇게 指定된 ○○○銀行에서만 그 買入信用狀을 使用할 수 있다. 만일 買入銀行 이외의 中間銀行이 自己의 危險負擔으로 買入을 行했다면, 그러한 買入은 正當한 買入이 아니므로, 그 中間銀行은 非授權 買入銀行으로서 1983年 規則에서 認定하고 있는 開設銀行에 대한 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음은 當然하다.<sup>43)</sup>

한편 1983年 規則 第11條 c項의 規定에 따라 買入銀行은 開設銀行 및 確認銀行이 아닌 한,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가 提示된 경우에도 買入을 拒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買入銀行이 買入을 거절하는 경우 그 信用狀이 取消不能信用狀이라면, 開設銀行은 1983年 規則 第10條 a項 (iv)號의 規定에 의거해서 受益者에 의해 發行된 換어음의 支給責任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受益者는 開設銀行으로부터 직접 輸出代金을 회수할 수 있다.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 買入銀行으로 指定될 수 있는 銀行은 通知銀行 또는 그 以外의 第三銀行이다.<sup>44)</sup> 輸出地 所在의 通知銀行이 買

41) ICC Publication No. 416, p.26, p.59 및 pp.77-78.

42) ICC Publication No. 416, p.26, p.59 및 pp.77-78.

43) 大韓商工會議所, 前掲資料, p.9; 信用狀 統一規則 第5次 改正 最終試案 第9條 a項에 의하면, 取消不能信用狀의 경우 信用狀의 要求書類는 반드시 指定銀行이나 開設銀行에만 提示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므로 受益者는 이點에 留意해야 한다.

44) ICC Publication No. 416, pp.77-78; 종전에는 開設銀行이 自身을 買入銀

入銀行으로 指定되는 경우에는, 그 信用狀의 有效期間 終了地가 通知銀行의 所在地인 輸出地가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 그러나 外國에 所在하는 第三銀行이 買入銀行으로 指定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信用狀의 有效期間 終了地는 外國이고, 또 그러한 信用狀에 의한 買入을 依賴하기 위해서는 外國에 있는 그 買入銀行에 換어음과 書類를 有效期日 및 書類提示期間 이내에 提示해야 하는데, 그러한 期日 및 期間 이내에 換어음과 書類를 提示하기란 容易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어음發行條件의 有無

制限買入信用狀에는 어음發行條件이 있으며, 그 條件은 買入銀行 이외의 者를 어음支給人으로 하는 一覽拂어음 또는 期限附어음을 發行하도록 한 것이다.<sup>45)</sup> 여기서 買入銀行 이외의 者란 通知銀行이 買入銀行으로 指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通知銀行 이외의 者인 開設銀行, 通知銀行 이외의 第三銀行 및 開設依賴人을 말하고, 通知銀行 이외의 第三銀行이 買入銀行으로 指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開設銀行, 通知銀行, 通知銀行 이외의 第三銀行을 除外한 第四銀行 및 開設依賴人을 말한다.<sup>46)</sup>

이처럼 制限買入信用狀에 있어서 買入銀行은 換어음의 支給인이 될 수 없음은 지극히 當然하다. 왜냐하면 “買入信用狀”이란 受益者에 의해 發行되는 換어음의 買入을豫定 및 認定하고 있는 信用狀이므로, 買入銀行은 자신 이외의 者가 어음支給人으로 되어 있는 換어음만을

行으로 指定할 수 있는 것으로 ICC Publication No. 323, 1978. 12, p.10에 기재되어 있었다.

45) ICC Publication No. 416, 1986. 4, p.26 및 pp.77-78;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p.27.

46) 信用狀 統一規則 第5次 改正 最終試案 第9條(a項 및 b項)를 보면, 信用狀의 受益者는 開設銀行이나 確認銀行 또는 다른 指定銀行 以外에 開設依賴人 앞으로 換어음을 發行할 수 없도록 새로이 規定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信用狀이 開設依賴人 앞으로 換어음을 發行하도록 規定한 경우에는 銀行은 그러한 換어음을 追加書類로만 간주하는 것으로 하여, 開設依賴人 앞으로의 換어음 發行을 엄격히 禁止하고 있다(大韓商工會議所, 前揭資料, p.9).

買入할 수 있기 때문이며, 買入銀行은 자신을 어음支給人으로 하여 發行된 換어음에 대하여는 自身이 그 어음을 買入할 수는 없고, 오직 그 어음의 支給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一覽拂어음과 期限附어음 중 어느 것이나 發行할 수 있는데, 이것이 前述한 支給信用狀이나 引受信用狀과 區別되는 買入信用狀의 特性이다. 다시 말하여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原則적으로 換어음이 發行되지 않지만, 혹시 發行된다면 一覽拂어음이 發行되고, 延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換어음이 發行되지 않으며, 또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期限附어음만이 發行된다. 그런데 制限買入信用狀과 後述하는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각 信用狀의 條件에 따라 一覽拂어음과 期限附어음 중 어느 것이나 發行할 수 있으며 이 점이 바로 買入信用狀의 特性으로 指摘될 수 있다.

#### ④ 買入의 認定與否

制限買入信用狀은 後述하는 自由買入信用狀과 함께 買入이 豫定되어 있고 또한 買入은 당연히 認定된다.<sup>47)</sup> 이 점이 또한 支給信用狀이나 引受信用狀과 확연히 區別되는 買入信用狀의 特性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支給信用狀과 引受信用狀에 있어서는 모두 買入이 豫定되어 있지 않고, 또 原則적으로 買入이 認定되지 아니 한다. 이에 반하여 買入信用狀에 있어서는 買入이 당연히 認定되며,<sup>48)</sup>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는 買入銀行에서만의 買入이 認定되며, 또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不特定 多數의 銀行에서의 買入이 認定된다.

47) ICC Publication No. 305, 1978. 5, p.28; ICC Publication No. 415, 1985. 2, p.31.

48) 信用狀에 의거하여 發行된 換어음이 買入될 것이 豫想되어 이를 許容한 信用狀을 "negotiation credit"이라 하고, 이에 反하여 어음의 買入을 豫想하지 않고 信用狀條件에 一致해서 發行된 어음이 受益者로부터 開設銀行 또는 그 指定銀行에 提示되었을 때에 支給할 것을 約束한 信用狀을 "straight credit"이라고 칭하기도 한다(小林 甫, 現代貿易商務論, 泉天堂, 1985, p.106).

만일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 買入銀行 이외의 어떤 中間銀行이 非授權 買入銀行의 자격으로 買入을 행했다면, 그러한 中間銀行은 自己의 危險負擔으로 買入을 행한 것이 되며, 따라서 그 中間銀行은 1983年 規則 第11條 d項에 規定되어 있는 開設銀行에 대한 償還請求權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非授權 買入銀行이라 칭할 수 있는 그 中間銀行에 의해 送付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고, 또 그러한 書類가 當該 信用狀의 有效期日 및 書類提示期間 이내에 開設銀行에 到達한 경우에 한하여, 開設銀行은 그 中間銀行에게 어음金額을 支給한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에 開設銀行은 同一書類의 副本이 買入銀行에 다시 提示될 수도 있는 危險을 回避하기 위한 諸般措置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sup>49)</sup>

## ⑤ 開設銀行의 確約內容

### 가. 取消不能信用狀의 경우

取消不能의 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1983年 規則 第10條 a項 (iv)號의 規定에 따라 開設銀行은 信用狀의 諸條件를 充足시키는 明記된 書類가 제시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受益者에 의해 發行된 換어음을 支給하는 것, 또는 他銀行에 의한 買入이 行해지도록 하고, 또 그러한 買入이 行해지지 아니한 때는 위와 같이 支給하는 것을 確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開設銀行의 確約內容은 上記의 前提條件이 充足된다면, 開設銀行은 信用狀開設依賴人 혹은 開設銀行 이외의 信用狀上에 指定된 기타의 자를 支給人으로 하여 受益者が 發行한 一覽拂어음 혹은 期限附어음을, 어음發行人 및/또는 善意의 所持人の 償還義務를 免除하고 (without recourse to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開設銀行 자신이 支給한다는 것을 確約하고, 또 開設銀行은 他銀行에 의한 買入이 行해지도록 하며, 만약 그러한 買入이 行해지지 아니한 때는 開設銀行 자신이 위에서와 같이 支給한다는 것을 確約하고 있는 것이

---

49) ICC Publication No. 459, 1989. 2, p.40; ICC Publication No. 434, 1987. 9, pp.13-14.

다.

#### 나. 取消可能信用狀의 경우

取消可能의 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取消不能 買入信用狀의 경우와 같은 開設銀行의 確約은 存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取消可能 買入信用狀의 경우에 있어서도, 1983年 規則 第9條 b項 (i)號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開設銀行으로부터 買入의 權限을 부여받은 買入銀行이 그 信用狀의 取消 또는 條件變更의 通知를 받기에 앞서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와 相換으로 受益者 發行의 換어음을 買入하였다면, 開設銀行은 그 買入銀行에 대한 償還義務를 지는 것이다.

#### (2) 制限買入信用狀의 使用方式

制限買入信用狀의 使用方式은 買入方式인데, 買入方式에 의한 貿易代金의 決済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 ① 要求書類의 具備 및 換어음의 發行

制限買入信用狀은 貨換信用狀의 一種이므로 提示를 要求하는 書類의 明細가 반드시 信用狀條件으로 信用狀上에 明示된다. 따라서 受益者는 信用狀에 의한 納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즉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는 要求書類를 具備해야 한다.

또한 受益者는 信用狀上의 어음發行條件에 合致하는 換어음을 發行해야 한다. 그 換어음은 前述한 바와 같이 一覽拂어음(sight draft)과 期限附어음(usance draft or time draft) 중 하나이며, 어음상의 支給人은 반드시 信用狀上에 明示되어 있는 支給人과 一致해야 하며, 그者는 買入銀行 이외의 者이다. 왜냐하면 買入銀行은 自己自身이 어음支給人으로 되어 있는 換어음을 買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開設銀行은 信用狀上의 어음發行條件를 確定할 때에 買入銀行 以外의 자, 보통 開設銀行 自店 또는 開設銀行의 預置換去來銀行(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경우에 따라서는 開設依賴人을 어음支給人으로 指定하게 된다.

##### ② 書類의 提示 및 換어음의 買入要請

受益者는 具備書類를 指定銀行인 買入銀行에 提示하고 換어음의 買

入을 要請한다. 書類의 提示는 信用狀의 有效期日 및 書類提示期間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指定銀行인 買入銀行이 外國所在의 銀行인 경우 여려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③ 書類의 審查 및 買入措置

買入要請를 받은 買入銀行은 1983年 規則 第15條의 規定에 따라相當한 注意를 다하여 提示된 書類의 審查를 행한다. 이러한 書類의 審查는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가의 與否를 確認하기 위한 것이며, 一致하는 것으로 判斷되는 경우에는 買入을 實行한다. “買入”(negotiation)이란 前述한 바와 같이 買入銀行이 換어음이나 書類를 受理하고 그 價額을 支給하는 것이므로, 買入銀行의 買入措置는 바로 受益者에 대한 輸出代金의 支給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買入銀行에 의한 買入으로 受益者は 사실상 輸出代金을 回收하게 되지만, 아직 信用狀去來가 完結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受益者 發行의 換어음이 不渡되는 경우에는, 買入銀行 또는 善意의 어음所持人은 어음發行者인 受益者에게 不渡어음의 償還請求(recourse)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가 提示된 경우에도 買入銀行은 1983年 規則 第11條 c項의 規定에 따라 買入을 拒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信用狀이 取消不能信用狀이라면, 受益者は 1983年 規則 第10條 a項 (iv號)의 規定에 의거하여 開設銀行으로부터 직접 換어음의 支給을 받게 된다.

### ④ 書類의 送付 및 償還請求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와 相換으로 買入을 행한 買入銀行(開設銀行 이외의 銀行)은 1983年 規則 第16條 a項의 規定에 따라 償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買入을 행한 書類를 開設銀行에 送付하고 償還을 要請하여 事前에 合意된 대로 償還을 받게 된다.

### ⑤ 開設銀行의 書類審查 및 償還

買入銀行으로부터 書類를 接受한 開設銀行 역시 1983年 規則 第15條의 規定에 의거接受된 書類를 審查해야 한다. 그 결과 書類에 瑕疵

(discrepancies)가 없다고 判斷되면 買入銀行에게 償還을 해 준다.

그러나 審查한 결과 書類에 瑕疵가 있다고 判斷될 경우, 開設銀行은相當한 期間內에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書類送付銀行인 買入銀行에 대한 償還을 거부하게 된다.<sup>50)</sup>

#### ⑥ 書類의 來到通知 및 補償請求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를 接受하고 審查를 마친 開設銀行은 開設依賴人인 輸入業者에게 書類의 來到通知를 하고 또한 償還金의 補償을 請求한다.

#### ⑦ 書類의 引受 및 輸入代金의 決済

書類의 來到通知에 접한 輸入業者는 來到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지의 與否를 確認하고, 一致하는 경우에는 그 書類를 引受하고 또한 開設銀行의 補償請求에 응한다. 그렇지만 來到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지 않는다고 判斷되고, 또한 그 瑕疵있는 書類를 引受할 意思가 有する 경우에는, 開設依賴人인 輸入業者는 그 書類의 引受를 拒絶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輸入業者는 開設銀行의 補償請求도 거절할 權利가 있음을 당연하다.

여기서 留念해야 할 事項은 信用狀上의 어음發行條件에 어떠한 種類의 換어음을 發行토록 規定하였느냐에 따라 輸入業者の 輸入代金 決済의 時點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一覽拂어음의 發行條件인 경우에는 輸入業者が 開設銀行으로부터 書類를 引受하는 時點이 바로 輸入業者が 輸入代金을 決済해야 할 時點이다. 한편 期限附어음의 發行條件인 경우에는 輸入業者が 輸入代金을 決済해야 하는 時點은 開設銀行으로부터 書類를 引受하는 時點이 아니고, 그 信用狀에 의거 發行된 期限附어음의 滿期日이 바로 輸入業者が 輸入代金을 決済해야 하는 期日이 된다.

## 2. 自由買入信用狀의 特性 및 使用方式

---

50) ICC 1983年 規則 第16條 b~e項 參照.

“自由買入信用狀”(freely negotiable credit)이란 前述한 바와 같이 不特定 多數의 銀行에 의한 買入이 許容되어 있는 買入信用狀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說明한다면, 受益者가 換어음을 發行하고 信用狀에서 要求한 書類를 그것에 添附하여 買入의 權限이 授權되어 있는 不特定 多數의 銀行中 어느 銀行에나 그 換어음과 書類를 提示하고 買入을 依賴하면 그러한 依賴를 받은 銀行은 買入이 授權된 非指定 買入銀行으로서 買入을 행하게 되는 信用狀이 바로 自由買入信用狀이다.

이러한 自由買入信用狀의 特性으로는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買入方式으로 使用可能하다는 趣旨의 文言이 信用狀上에 明示된다는 점, 支給信用狀, 引受信用狀 및 制限買入信用狀과는 달리 信用狀上에 指定銀行이 指定되지 않고 모든 銀行에 의한 買入이 許容된다는 점, 信用狀의 文面에는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음發行條件이 明示되며, 어음은 一覽拂어음과 期限附어음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점, 그리고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買入은豫定되어 있으며, 또 그것은 당연히 認定되고 있다는 점 등을 指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自由買入信用狀의 特性과 그 使用方式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言及한다.

### (1) 自由買入信用狀의 特性

#### ① 使用方式의 表示

自由買入信用狀은 前述한 制限買入信用狀과 마찬가지로 買入信用狀의 一種이기 때문에, 그 信用狀의 文面에는 반드시 買入方式으로 使用可能하다는 趣旨의 文言, 예를 들어 “available by negotiation”, “freely negotiable by any bank”, “freely negotiable credit” 등의 文言이 明示되어야 한다.<sup>51)</sup>

#### ② 指定銀行의 有無

51) ICC 1983年 規則 第11條 a項 參照; ICC Publication No. 416, p.26, p.59 및 p.78; 朝岡良平, 前揭書, pp.117-118.

前述한 制限買入信用狀과는 달리 自由買入信用狀에는 買入銀行이 指定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어떠한 銀行이던지 買入을 원하면 買入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銀行에게 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것이다.<sup>52)</sup> 이 點이 바로 自由買入信用狀의 固有의 特性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支給이 授權되어 있는 支給銀行이 指定되며,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期限附어음을 引受할 權限이 授權되어 있는 引受銀行이 指定되고,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買入銀行이 指定된다. 그렇지만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에 있어서만은 別途로 特定의 銀行에 買入을 制限하기 위한 買入銀行의 指定이 없다. 이처럼 自由買入信用狀만이 買入銀行을 指定하지 아니 하는 唯一한 貨換信用狀이므로 이 點을 自由買入信用狀의 固有의 特性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一般的으로 自由買入信用狀은 모든 銀行의 買入을 授權하는 方法으로서 “available with any bank…(place/country)” 또는 “available with any bank”라는 두 가지의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sup>53)</sup> 위 첫째의 方法을 採擇한 경우에는 “any bank” 뒤에 기재되는 特定의 地域 또는 國家 내에 있는 모든 銀行에게 買入을 授權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위 둘째의 方法, 즉 “available with any bank”라고만 記載할 뿐 그 뒤에 特定의 地域이나 國家를 記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모든 나 라의 모든 銀行에게 買入을 授權하는 것이 된다.

### ③ 어음發行條件의 有無

自由買入信用狀에도 어음發行條件은 있다. 따라서 受益者가 輸出代金을 回收하기 위해서는 換어음을 發行해야 한다. 受益者 發行의 換어 음은 各信用狀의 條件에 따라 一覽拂어음일 수도 있고, 期限附어음일

52) ICC 1983年 規則 第11條 b項 및 d項 參照.

53) ICC Publication No. 416, p.59 및 p.78; 첫째의 方法을 採擇한 自由買入信用狀을 ICC에서는 “Credit Freely Negotiable by Any Bank in a Stated Place or Country”라 칭하고, 둘째의 方法을 採擇한 自由買入信用狀을 ICC에서는 “Credit Freely Negotiable by Any Bank Worldwide”라 칭한다.

수도 있다.<sup>54)</sup> 다시 말하여 自由買入信用狀의 어음發行條件으로는 一覽拂어음과 期限附어음 중擇一하여 信用狀條件으로 規定하게 된다.

어음支給人으로는 보통 開設銀行 또는 開設銀行의 預金이 預置되어 있는 開設銀行의 預置換去來銀行이 明示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通知銀行 또는 開設依賴人이 어음支給人으로 指定될 수도 있으므로 留意해야 한다. 이렇게 어음支給人으로 明示된 銀行은 受益者 發行의 換어음을 支給할 수 있을 뿐, 그 어음을 買入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④ 買入의 認定與否

前述한 바와 같이 自由買入信用狀은 制限買入信用狀과 마찬가지로 買入이豫定되어 있고, 또 買入은 당연히 認定된다. 이것이 買入信用狀의 特性임은前述한 바이다. 그리고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制限買入信用狀과는 달리 不特定 多數의 銀行에게 買入의 權限이 授權되므로, 受益者は自己에게有利하다고 判斷되는 買入銀行을 任意로 選擇할 수 있다.

한편 1983年 規則 第11條 d項의 規定에 의하면, 開設銀行은 모든 銀行에 의한 買入을 許容함으로써 모든 銀行에게 買入을 授權하게 되고, 또 그렇게 買入이 授權되어서 실제로 買入을 행한 買入銀行에 대하여는 開設銀行이 償還義務를 지게 된다.

#### ⑤ 開設銀行의 確約內容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同一하다.

### (2) 自由買入信用狀의 使用方式

自由買入信用狀의 使用方式도 買入方式이다. 自由買入信用狀은前述한 制限買入信用狀과 마찬가지로 買入信用狀의 一種이므로 그 使用方式이 買入方式임은 당연하며, 따라서 自由買入信用狀에 의한 貿易代金의 決濟方式도 制限買入信用狀에 의한 決濟方式과 大同小異하다.

自由買入信用狀의 固有의 特性은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信用狀上에 買入銀行이 指定되지 않고 不特定 多數의 銀行에 의한 買入이 授

---

54) ICC Publication No. 416, p.26 및 p.78.

權되어 있다는點이다. 이러한特性 때문에自由買入信用狀의 買入方式은 制限買入信用狀에 있어서의 買入方式과 다소 差異가 있을 뿐이다.

### ① 要求書類의 具備 및 換어음의 發行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도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信用狀上에 要求書類의 明細가 明示되므로, 受益者は 自由買入信用狀에 의한 約定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를 具備해야 한다. 또한 受益者は 信用狀條件의 어음發行條件에 따라 一覽拂 어음 또는 期限附어음을 發行한다. 어음의 支給人은 信用狀上에 指定되는데, 보통 開設銀行 또는 開設銀行의 預金이 預置되어 있는 開設銀行의 預置換去來銀行(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이 어음支給人으로 指定된다.<sup>55)</sup>

### ② 書類의 提示 및 換어음의 買入要請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買入銀行이 別途로 指定되지 않고 모든 銀行에 의한 買入이 授權되어 있으므로, 受益者は 自己가 發行한 換어음과 所定의 要求書類를 어느 銀行에나 提示하고 買入을 要請할 수 있다. 이 점이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다르다. 즉,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 受益者は 반드시 要求書類와 換어음을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는 買入銀行에 提示하고 買入을 要請해야 한다. 그렇지만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不特定 多數의 銀行中에서 受益者が 任意로 한 銀行을 選擇하여 그 銀行에게 買入을 要請하는 것이다.

### ③ 書類의 審查 및 買入措置

買入을 要請받은 銀行은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相當한 注意를 다하여 提示된 書類를 審查할 義務가 있으며, 그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면 買入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節次를 거쳐 任意의

---

55) 開設銀行의 預置換去來銀行이 어음支給人으로 指定되는 경우, 그 銀行은 買入銀行의 買入代金을 償還해 주는 償還銀行(reimbursing bank)이 되는 것이다(1983年 規則 第21條 a項 參照).

銀行이 買入을 實行하게 되면 그 銀行은 信用狀去來의 當事者인 買入銀行의 資格을 취득하게 되며, 또한 1983年 規則 第16條 a項에 規定되어 있는 開設銀行에 대한 償還請求權을 取得하게 된다.

#### ④ 書類의 送付 및 償還請求

上記의 買入銀行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를 開設銀行에 送付하고, 自己가 取得한 償還請求權을 開設銀行 또는 開設銀行이 定한 償還銀行(reimbursing bank)에 대하여 行使한다.

#### ⑤ 開設銀行의 書類審查 및 償還

開設銀行은 接受한 書類를 審查하고 그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면, 書類를 送付한 買入銀行에게 買入代金을 償還해 줄 義務가 있으며, 또한 그 書類를 引受할 義務가 있다.<sup>56)</sup>

#### ⑥ 書類의 來到通知 및 補償請求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同一하다.

#### ⑦ 書類의 引受 및 輸入代金의 決濟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와 同一하다.

## V. 結論

### 1. 支給·引受·買入信用狀의 特性比較

아래의 比較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그것이 一覽支給信用狀이면 그 使用方式은 “一覽支給方式”이라는趣旨의 文言, 그리고 그것이 延支給信用狀이면 그 使用方式은 “延支給方式”이라는趣旨의 文言이 信用狀上에 表示되며, 引受信用狀의 경우 그 使用方式은 “引受方式”이라는趣旨의 文言이 表示되고, 또 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그것이 制限買入信用狀이던 또는 自由買入信用狀이던 상관없이 그 使用方式은 “買入方式”이라는趣旨의 文言이 表示된다.

56) ICC 1983年 規則 第16條 a項 參照.

指定銀行의 有無라는 側面에서 各信用狀의 特性을 살펴 보면, 買入信用狀 중에서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에만 指定銀行이 없으며, 余他의 信用狀의 경우에는 모두 指定銀行이 存在한다. 이것은 自由買入信用狀을 除外한 모든 信用狀, 즉 一覽支給信用狀, 延支給信用狀, 引受信用狀 및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信用狀의 當事者로서 指定銀行이 반드시 登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一覽支給信用狀과 延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支給이 授權되어 있는 支給銀行이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으며,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換어음의 引受가 授權되어 있는 引受銀行이 信用狀上에 指定되어 있고, 또 買入信用狀中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買入銀行이 信用狀上에 반드시 指定되어 있다.

어음發行條件의 有無라는 側面에서 各信用狀의 特性을 살펴 보면, 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 그것이 一覽支給信用狀이든지 혹은 延支給信用狀이든지 상관없이 原則的으로 信用狀上에 어음發行條件이 없다. 다만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에는例外的으로 어음發行條件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一覽拂어음을 發行하는 條件이다.

그러나 引受信用狀과 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信用狀上에 어음發行條件이 있다. 즉,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반드시 期限附어음을 發行하는 條件이 明示되는 것이 特性이며, 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一覽拂어음과 期限附어음 중 어느 것이나 發行할 수 있는 條件이 信用狀上에 明示된다.

어음支給人の 指定 與否를 살펴 보면, 上述한 바와 같이 支給信用狀의 경우 原則的으로 어음發行條件이 없으므로 어음支給人을 指定하는 條件도 없다. 다만 一覽支給信用狀으로서 一覽拂어음을 發行하는 條件이 信用狀上에 明示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어음의 支給人으로는 支給銀行이 指定된다.

어음發行條件이 明示되어 있는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그 條件에 따라 發行되는 期限附어음의 支給人으로는 引受銀行이 指定되는 것이 原則이다.

어음發行條件이 明示되어 있는 買入信用狀의 경우에도 어음支給人이 반드시 信用狀上에 指定되기는 하지만,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買入銀行 이외의 자가 어음支給人으로 指定된다. 그러나 自由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買入銀行이 指定되지 않고 모든 銀行에 의한 買入이 許容되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開設銀行 또는 開設銀行의 預置換去來銀行, 경우에 따라서는 開設依賴人이 어음支給人으로 指定된다.

支給·引受·買入信用狀의 特性比較表

貨換信用狀의 種類 區分	支給信用狀		引受 信用狀	買入信用狀	
	一覽支給 信用狀	延支給 信用狀		制限買入 信用狀	自由買入 信用狀
1. 使用方式의 表示	有	有	有	有	有
· 一覽支給方式	O				
· 延支給方式		O			
· 引受方式			O		
· 買入方式				O	O
2. 指定銀行의 有無	有	有	有	有	無
· 支給銀行	O	O			
· 引受銀行			O		
· 買入銀行				O	
3. 어음發行條件의 有無	無(有)	無	有	有	有
· 一覽拂어음	(O)			O	O
· 期限附어음			O	O	O
4. 어음支給人の 指定	無(有)	無	有	有	有
· 指定銀行	(O)		O		
· 開設銀行 및 指定銀行 以外의 第三銀行				O	O
· 開設依賴人				O	O
5. 買入의 認定與否	不認定	不認定	不認定	認定	認定
· 買入銀行				O	
· 非指定買入銀行					O

한편 買入의 認定 與否를 살펴 보면, 買入信用狀만이 買入을 正式으로 認定하고 있으며, 支給信用狀과 引受信用狀의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買入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買入信用狀의 一種인 制限買入信用狀의 경우에는, 指定된 買入銀行에서 만의 買入이 認定되고 있으며,

買入銀行 이외의 어떤 銀行이 자기의 危險負擔으로 買入을 행하였다  
면 그러한 買入은 非公式 買入으로 간주된다.

또한 支給 · 引受 · 買入信用狀이 取消不能信用狀이라면, 開設銀行의  
確約이 成立되는데 그러한 確約의 內容은 各信用狀마다 相異하다. 즉,  
開設銀行은 信用狀의 諸條件를 充足시키는 明記된 書類가 提示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信用狀別로 다음과 같이 相異한 確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取消不能 一覽支給信用狀의 경우, 開設銀行은 支給을 行하는  
것 또는 支給이 行해지는 것을 確約하고,

둘째, 取消不能 延支給信用狀의 경우, 開設銀行은 信用狀의 條件에  
따라서 決定되는 期日에 支給을 行하는 것 또는 支給이 行해지는 것  
을 確約하며,

셋째, 取消不能 引受信用狀의 경우, 開設銀行은 受益者에 의해 發行  
되는 換어음을 引受하는 것 또는 그러한 換어음의 引受 및 滿期支給  
을 責任지는 것을 確約하고,

넷째, 取消不能 買入信用狀의 경우, 開設銀行은 受益者에 의해 發行  
되는 一覽拂어음 또는 期限拂어음을 어음發行人 및/또는 善意의 所持  
인의 償還義務를 免除하고서 支給하는 것 또는 他銀行에 의한 買入이  
행해지도록 하거나, 그러한 買入이 行해지지 아니 한다면 開設銀行 자  
신이 위와 같이 支給하는 것을 確約하고 있는 것이다.

## 2. 各方式의 共通點과 相異點

支給信用狀, 引受信用狀 및 買入信用狀의 使用方式은 각각 支給, 引  
受 및 買入方式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使用方式에는 共通點도 있지만  
相異點도 있다.

우선 그 共通點을 指摘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세 가지의 信用狀은 모두 貨換信用狀이기 때문에 支給 · 引  
受 · 買入을 위하여 提示해야 하는 商業書類의 明細가 信用狀上에 明  
示되므로, 受益者가 信用狀에 의한 支給 · 引受 · 買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商業書類를 具備하여 그것을 支給·引受·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銀行에 提示해야 한다는 點이다.

둘째, 支給·引受·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銀行은 提示된 商業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지의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相當한 注意를 다하여 그 書類의 審查를 행하고, 一致하는 경우 그 商業書類를 受理한다는 점, 그리고 그 銀行이 開設銀行 이외의 銀行이라면 受理한 書類를 開設銀行 앞으로 送付한다는 점이다.

셋째, 送付되어 온 商業書類를 接受한 開設銀行도 그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다시 書類의 審查를 행하고, 一致한다고 判斷되는 경우 開設銀行은 그 書類를 引受하고 書類를 送付한 銀行, 즉 支給·引受·買入을 행하는 銀行에 대하여 이미 約定한 바에 따라 支給·引受·買入의 資金을 償還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開設銀行은 自己가 引受한 商業書類를 開設依賴人에게 引渡하고 그로부터 輸入代金을 決濟받아 自己의 償還金에 充當한다는 點이다.

여기서 支給, 引受 및 買入方式이라는 세 가지 使用方式에 있어서의 相異點을 指摘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書類의 指示 및 支給·引受·買入의 要請

첫째, 支給方式의 경우에는 受益者가 信用狀에 의한 支給을 받기 위하여 具備書類를 指定銀行인 支給銀行에 指示하고 支給을 要請하며,

둘째, 引受方式의 경우에는 受益者가 우선 期限附어음을 發行하고 그 換어음에 具備書類를 添附하여 그 貨換어음의 引受를 받기 위하여 그것을 指定銀行인 引受銀行에 指示하고 期限附어음의 引受를 要請하며,

셋째, 買入方式의 경우에는 受益者가 信用狀上의 어음發行條件에 따라 一覽拂어음 또는 期限附어음을 發行하고 그 換어음에 具備書類를 添附하여 그 貨換어음의 買入을 依賴하기 위하여 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買入銀行에 그것을 提示하고 提示된 貨換어음의 買入을 要請한다는 점에서 相互間에 差異點이 있다.

### (2) 支給·引受·買入銀行의 支給·引受·買入問題

첫째, 支給方式의 경우에는 支給이 授權된 支給銀行에 의해 一覽支給 또는 延支給이 행해지며, 이러한 一覽支給 또는 延支給에 의해 受益者는 輸出代金을 回收하게 된다.

둘째, 引受方式의 경우에는 換어음 引受의 權限이 授權되어 있는 引受銀行에 의해 期限附어음의 引受가 행해지고, 그 引受어음의 滿期日에 어음代金이 支給됨으로써 비로소 受益者는 輸出代金을 回收하게 된다. 그러나 受益者는 그 引受어음의 滿期日 이전에 國內外의 金融市場에서 그 引受어음을 割引賣却함으로써 資金化할 수도 있다.

셋째, 買入方式의 경우에는 買入이 授權되어 있는 買入銀行(指定銀行 또는 不特定 多數의 授權銀行)이 商業書類가 添附된 受益者 發行의 一覽拂어음 또는 期限附어음을 買入하며, 이러한 買入에 의해 受益者는 輸出代金을 回收하게 된다.

### (3) 開設銀行의 償還問題

첫째, 支給方式의 경우 開設銀行은 自己가 支給의 權限을 授權해 준 支給銀行에서 행하는 支給의 資金을 償還해 주며,

둘째, 引受方式의 경우 開設銀行은 自己가 換어음 引受의 權限을 授權해 준 引受銀行에서 引受를 행한 受益者 發行의 期限附어음의 代金을 그 引受어음의 滿期日에 償還해 주며,

셋째, 買入方式의 경우 開設銀行은 自己가 買入의 權限을 授權해 준 買入銀行에서 買入을 행한 受益者 發行의 一覽拂어음 또는 期限附어음의 代金을 이미 約定한 바에 따라 그 買入銀行에 償還해 준다.

### (4) 開設依賴人의 輸入代金 決済問題

첫째, 開設依賴人은 一覽支給方式의 경우에는 商業書類가 開設銀行에 來到한 時點에, 그리고 延支給方式의 경우에는 信用狀의 條件에 따라서 決定되는 장래의 特定期日에 輸入代金을 決済하고,

둘째, 引受方式의 경우 開設依賴人은 引受銀行에 의해 引受된 期限附어음의 滿期日에 輸入代金을 決済하며,

셋째, 開設依賴人은 一覽拂어음을 發行하는 條件의 買入方式의 경우

에는 商業書類가 開設銀行에 來到한 時點에, 그리고 期限附어음을 發行하는 條件의 買入方式의 경우에는 그 期限附어음의 滿期日에 輸入代金을 決濟한다.

### 3. 結 言

이상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支給信用狀, 引受信用狀 및 買入信用狀에는 여러 가지의 特性이 있으며, 또한 支給·引受·買入信用狀의 使用方式인 支給, 引受 및 買入方式의 相互間에는 共通點도 있지만 相異點도 있다.

따라서 輸出入業者가 取消不能 貨換信用狀에 의한 代金決濟條件의 貿易去來를 함에 있어서 그 貨換信用狀이 支給·引受·買入信用狀中 어느 種類의 信用狀이냐에 따라서 輸出入業者の 어느一方에 有利할 수도 있고 不利할 수도 있다. 더욱이 支給信用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一覽支給信用狀이냐 延支給信用狀이냐에 따라, 그리고 買入信用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制限買入信用狀이냐 自由買入信用狀이냐에 따라, 또한 그것이 一覽拂어음 發行條件인가 아니면 期限附어음 發行條件인가에 따라 輸出入業者の 어느一方은 不利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輸出入業者は 一覽支給信用狀, 延支給信用狀, 引受信用狀, 制限買入信用狀 및 自由買入信用狀의 特性을 熟知할 必要가 있으며, 나아가 支給, 引受 및 買入方式의 相異點도 熟知할 必要가 있다.

本論文은 第4次 改正 信用狀統一規則(1983年 規則)을 中心으로 敍述하였는데, 周知하고 있는 바와 같이 同規則은 現在 改正作業이 進行中이며 最終改正案은 오는 3月의 ICC 銀行技術·實務委員會에 回附되어 그 結果를 4月中에 ICC 執行委員會에 回附하고 承認을 얻는 대로 1993年 5月에 公表하고 1994年 1月 1일부터 施行하는 것으로 勸告할豫定에 있다. 따라서 第5次 改正作業이 完了되면 本論文의 一部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 參考文獻

- ICC,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Guidance Notes Recommendations*, Publication No. 416, 1986. 4.
- , *The new Standard Forms for the Issuing of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323, 1978. 12.
- , *Standard Forms for Issuing of Documentary Credits*, Brochure No. 268, 1970. 12.
-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74 Revision, Publication No. 290, 1981. 2.
-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3 Revision), Publication No. 400, 1983. 3.
- ,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Publication No. 415, 1985. 2.
- ,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Publication No. 434, 1987. 9.
-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459, 1989. 2.
- ,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Publication No. 305, 1978. 5.
- Schmitthoff, Clive M., *Schmitthoff's Export Trade*, 8th Edition, Stevens, 1986.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 5th Edi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74.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87.
- 朝岡良平, 逐條解說 信用狀 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 小林 甫, 現代貿易商務論, 泉文堂, 1985.

- 金容福, 信用狀論, 博英社, 1986.
- 金元培, 最新信用狀論, 大旺社, 1988.
- 朴大衛, 信用狀, 法文社, 1983.
- 吳世柱, 信用狀, 貿易經營社, 1984.
- 韓柱燮, 最新 信用狀論, 東星社, 1987.
- 韓國貿易學會, 『貿易學會誌』 第9卷, 1984. 2.